

제2020-306호

행정대집행 영장

성명(단체명) : 맹민관 귀하

주소: 미상

2019년 12월 31일, 제2019-1662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(컨테이너)을 2020년 01월 17일까지 원상복구(철거)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양평군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대집행 일시	행정대집행 책임자			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	소속	직위(직급)	성명	
2020.02.28일 이후 예고없이 1일	건설과	시설8급	이유리	추후산정

2020년 02월 17일

양 평 군 수

